

보도 필요... (필요)  
 방법 (자료제공, 특집, 회견 설명)  
 과 심 국 심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재개30321-444	(전화: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준영구		
시행일자	86.12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협조 기 관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협조통제관행정과장 재개발행정계장 재개발사업2계장
	재개발과장		
	재개발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장성룡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등의	시 장
제 목	도시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		
(제1안)	내부결재		
제 목	: 동건		
1. 건설부 고시 제285호(78.9.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533호(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공평구역제1지구 및 제2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2.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한바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 코			
자합니다,	24 심사	1986.12.31	제52호
	담당자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제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 고시 제285호(78.9.26)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533호(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공평구역제1지구및 제2지구의 재개

발사업계획을 도시 재개발법제5조, 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등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및 행정구청 시민 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2.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용도	비고
1	기정	2,711m <sup>2</sup>	33.7% (912.0m <sup>2</sup> )	430% (11,686m <sup>2</sup> )	13/2	업무	촌지
	변경	2,321	(1,018.5)	(15,322)	13/2	"	
2	기정	2,704	33.1 (946.0)	398 (11,345)	12/3	"	
	변경	3,094	350- 390	450- 475	15/4	"	

나. 관계도서 : 별첨(생략)

(제3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의뢰
1.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관
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종별 : 고시문
나. 게재건명 : 도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다. 게재근거 : 도시 재개발법제5조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첨부 1. 고시문 사본2부.
(제4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개발과장
제목 : 동건
1. 건설부 고시제285호(78.9.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533호(79.12.28)로 사업계획 결정된 공평구역 제1지구, 제2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1부.
(제5안)

수신 : 종로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동건

1. 도심재개발공명구역 제1지구, 제2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 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시민 봉사실애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것.

첨부 1. 고시문사본1부.

2. 변경도면 1부. 끝.



500

500

3957

